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준보전 산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